

교역자 후생업무 세칙

본 시행세칙은 총회 회칙 제 9조 3항(후생위원회)의 교역자 후생업무를 위하여 총회 회칙 제 46조(세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본 시행세칙은 C&MA 한인총회 교역자후생업무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2조 본 세칙은 본 총회 산하 교역자로, 정년 은퇴하거나 질병, 사고, 노쇠 등으로 직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 해당 교역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원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지급대상

제3조 본 총회 산하 교회, 기관 및 선교지에서 사역한 교역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 자.

- 1항 교회나 개인이 총회에서 지정한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
- 2항 총회 상회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자, (교회 사역자가 아닐 경우, 총회의 제반 사역에 충실히 순종, 협조하는 자)
- 3항 총회 정기모임에 충실히 참여하는 자

제4조 본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항 본 총회 교회에서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자
- 2항 본 총회에서 재직 중 소천한 회원 교역자의 배우자
- 3항 본 총회 소속 교회 시무 중 질병, 부상, 노쇠 등으로 인해 휴직 혹은 퇴직하는 경우, 실행위원회와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다.

제3장 연금 급여액 및 지급 방법

제5조 연금 지급액은 납부액과 총회 지원금 외 금융 이익금이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항 지급액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2항 다음에 해당된 자는 총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 교단 교회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교회 및 교역자
 2. 교단을 탈퇴한 자
 3. 목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실행위원회가 판단하는 자
- 3항 연금 지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된다.

제4장 재정

제6조 본 연금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 1항 각 교회는 교역자들의 연금 납부액을 정하여 총회가 개설한 403(b) 연금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인출되도록 한다. 또한 회원 개인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 2항 총회는 각 교회가 납부하는 상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해당 교회 담임 교역자를 위하여 지원한다.
- 3항 2항의 총회 지원금액의 비율은 매년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관리

제7조 본 연금은 실행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엄선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후생위원회가 수시 점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한인총회는 실행위원회가 인준한 “은퇴보조기금 시행규정”에 따라 “은퇴보조기금”을 운영한다.

제9조 한인총회는 실행위원회가 인준한 “연회비 은퇴 보조금 시행규정”에 따라 “연회비 은퇴보조금”을 운영한다.